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1030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박혜숙, 조상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연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1. 4. 6. 접수 제22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1. 4. 6. 접수 제22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8. 3. C로부터 차용금액 30,000,000원, 변제기일 2020. 11. 3.로 정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3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2021.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1.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는 C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C는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D와의 거래도 하였으므로, 원고 계좌에서 C에게 지급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C가 원고 계좌 혹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100,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20. 8. 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C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100,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C가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D와 거래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지급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인지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C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또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C의 적극재산

갑 제7호증, 을 제7, 8,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는 아래와 같이 합계 1,402,212,135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적극재산	가액(원)
1	아산시 E아파트, F호	60,000,000
2	아산시 G 전 1,084㎡ 중 5분의 1 지분	30,135,200
3	아산시 H 임야 163㎡ 중 5분의 1 지분	1,793,000
4	I 계좌 유가증권 총액	1,226,284,885
5	I 계좌 예수금	5,019,050
6	J에 대한 채권	78,980,000
합계		1,402,212,135

이에 대하여 원고는 J에 대한 채권을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K조합으로부터 2019. 5. 22. 65,000,000원, 2020. 1. 21.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2019. 5. 22. K조합으로부터 C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J의 L조합 계좌로 62,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20. 1. 21. K조합으로부터 C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J의 L조합 계좌로 19,940,000원이 이체된 사실, J은 2019. 6. 경부터 매월 위 양 대출금의 이자 또는 원리금 상당액을 C의 계좌에 입금하다가 C를 대신하여 2022. 9. 22.에는 2020. 1. 21. 자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 2022. 9.

26.에는 2019. 5. 22.자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는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전액을 J에게 대여하여 J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J이 이 사건 증여 전후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당액을 C에게 꾸준히 지급하다가 결국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면 J에 대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C의 적극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채무자 C의 소극재산

갑 제8, 9, 11호증,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는 아래와 같이 합계 1,355,599.797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소극재산	가액(원)
1	국세 체납액	69,320,230
2	지방세 체납액	7,201,040
3	I 단기성대출금	518,399,285
4	I 장기성대출금	511,699,242
5	K조합 대출금	78,980,000
6	D에 대한 채무	150,000,000
7	원고에 대한 채무	20,000,000
합계		1,355,599,797

피고는 C의 D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D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D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D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은 C의 소극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46,612,338원(=1,402,212,135원-1,355,599,797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C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다(C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아가 피고의 선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통정허위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C와 피고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장하여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5. 15. 피고가 5억 원을 대출받아 C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채권최고액 합계 6억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와 피고가 부부관계라거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

별지

목 록

1. 아산시 대 262.5㎡

999/1,000 지분

2. 아산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29.79㎡

2층 151.63㎡

3층 105.52㎡

1/2 지분, 끝.

